

「코로나19」 관련 조치 Q & A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 '20. 4. 13. 비자 및 입국규제 강화조치 관련 내용

‘20. 4. 13. 이후 효력이 정지되는 비자는 어떤 것인지?

⇒ ‘20. 4. 5.까지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비자에 한해 효력이 정지됨. (체류자격 C-1, C-3)

- 단, 장기비자와 단기취업(C-4) 비자는 예외

‘20. 4. 13. 이후, 추가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는 국가는?

⇒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 비자면제협정 국가 54개국과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33개가 해당 (*** 일본은 3.9. 부 입국제한조치 이미 시행중**)

<비자면제협정 국가 54개국>

아·태(4)	△ 뉴질랜드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태국
미주(18)	△ 바하마 △ 안티가바부다 △ 아이티 △ 엘살바도르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페루 △ 과테말라 △ 그레나다 △ 도미니카공화국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 수리남 △ 콜롬비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유럽(28)	△ 불가리아 △ 이탈리아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벨기에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아이슬란드 △ 에스토니아 △ 오스트리아 △ 체코 △ 카자흐스탄 △ 터키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중동(4)	△ 모로코 △ 아랍에미리트 △ 이스라엘 △ 튀니지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34개>

아·태(14)	△ 나우루 △ 마셜제도 △ 마이크로네시아 △ 키리바시 △ 호주 △ 솔로몬제도 △ 투발루 △ 피지 △ 홍콩 △ 대만 △ 마카오 △ 브루나이 △ 사모아 △ 통가
미주(5)	△ 아르헨티나 △ 에콰도르 △ 온두라스 △ 캐나다 △ 파라과이
유럽(5)	△ 몬테네그로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
중동(5)	△ 바레인 △ 오만 △ 사우디 △ 카타르 △ 쿠웨이트
아프리카(4)	△ 모리셔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보츠와나 △ 세이셸 △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20. 4. 13. 이후에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비자면제협정 국가 10개국>

미주(7)	△ 니카라과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베네수엘라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유럽(3)	△ 몰타 △ 아일랜드 △ 영국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11개>

아·태(3)	△ 괌 △ 뉴칼레도니아 △ 팔라우
미주(2)	△ 미국 △ 가이아나
유럽(6)	△ 모나코 △ 바티칸 △ 산마리노 △ 안도라 △ 알바니아 △ 슬로베니아

금번 4.13.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90개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을
단순 경유하여 환승하는 경우도 제한되는 것인지?

⇒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는 환승은 가능하지만,
환승 입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은 불가

단, 상기 90개국 국민을 포함하여,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 국민이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단순 환승도 허용되지 않음. (제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이나 중국으로 가는 경우는 환승 가능)

금번 4. 13.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 중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APEC 카드 소지자는 입국이 제한되는지?

⇒ '20. 4. 13.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제한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중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적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거, 무사증 입국이 불가

이 경우, 국내 입국 후 검역절차에 따라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임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금번 4. 13.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 중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되는지?

⇒ 항공기(선박)의 운항을 위해 탑승한 해당 항공기(선박)의 승무원
(선원)의 경우에는 금번 제한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국내 정박 중인 항공기(선박)의 근무교대를 위하여 승객자격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금번 제한조치의 대상이므로 사증(C-3, 030, 단
수)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입국 후 검역절차에 따
라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임 (격리 비용은 본인부담)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같이 금번 4.13.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선원의 교대목적 무사증
입국은 제한조치 대상인지?

⇒ 이번 사증면제/무사증 정지 대상국가(일본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선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박 중인 선박의 근무교대를 위해
승객 자격으로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

이 경우, 국내 입국 후 검역절차에 따라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임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 단, ①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② 후베이성 관할공관 발급 기존사증
효력 잠정정지, ③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국 제한 대상임

기존 발급된 사증으로 금번 제한 조치 이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 체류 중인 경우 출국하면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인지?

⇒ 금번 조치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국내에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출국한 이후 새롭게 사증을 발급받아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음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라고 하였는데 출국 후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 금번 조치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국내에 외국인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되어있고,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등 외국인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유효하다면 국내 체류에 문제가 없으며, 출국하더라도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음 (다만 잔여 체류기간과 재입국 면제기간 도과여부 확인 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비행기만 갈아타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환승의 경우에도 제한조치 대상이 되는지?

⇒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에만 제한조치에 해당함 (중국인 및 제3국 국민 모두 해당)

- 다만, 중국 외 제3국 출발의 경우에도 ①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② 후베이성 관할공관 발급 기존사증 효력 잠정정지, ③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국제한 대상임

2. 외국인 사증발급 · 체류 관련

□ '20. 3. 9. 추가 입국제한조치 관련 내용

'20.3.9. 추가 입국제한 조치 이후, 일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증을 발급하는지?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증신청 시 반드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상의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함

'20.3.9. 추가 입국제한 조치 이후, 사증이 무효화된 경우 해당사증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 '20. 3. 9. 0시부터 모든 사증이 잠정 무효화되었으므로 재신청이 필요하며, 일본 소재 한국 공관에서 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건강상태확인서) 등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20.3.9. 추가 입국제한 조치 이전에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3.9.부로 사증이 무효화되었음. 사증발급인정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사증발급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증 재신청만 필요. 일본 소재 한국 공관에서 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건강상태확인서) 등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20.3.9. 이전 사증발급인정서는 발급받았으나 아직 사증신청을 하지 않았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은 유지됨(별도 조치 없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내역을 제시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이내에 사증을 신청하면 됨. 일본 소재 한국 공관에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건강상태확인서) 등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20.3.9. 조치 이후, 일본 국적의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포함)의 경우에는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한지?’

⇒ 금번 3. 9. 조치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일본 국민 중 국내에 외국인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되어있고,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등 외국인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유효하다면 국내 체류에 문제가 없으며, 출국하더라도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음(다만 잔여 체류기간과 재입국 면제기간 도과여부 확인 필요)

‘20.3.9. 이전 일본 국민이 한국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아직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면 재입국이 가능한지?’

⇒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재입국이 불가능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도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만 다시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음(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증 잠정 무효화에 따라 다시 사증을 받아야 함)

< 재입국허가 면제기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재외동포법 제10조) >

1. 체류자격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F-4): 출국기간과 관계없이 재입국허가 면제

‘20. 3. 9. 조치로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정지되었습니다. 관광·상용 목적을 위하여 어떤 사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20. 3. 9.부로 일본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잠정 정지되었으므로 관광·상용목적 방문을 위하여 단기방문(C-3) 사증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국 공관에서 사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건강상태확인서) 등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 사증수수료는 면제

‘20. 3. 9. 조치로 전자사증의 효력도 정지됩니까? 전자사증 신청 및 발급은 기존대로 이루어지는지?

⇒ 이미 발급된 전자사증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 다만, ‘20. 3. 9.부터 사증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전자사증 신청 및 발급이 제한됨. 따라서 사증을 신청하려면 한국 공관에 신청하여야 함.

사증 무효화 조치 이전에 단기체류자격(B-2, C-1, C-3, C-4)으로 입국하였음. 사증 무효화 조치 및 사증면제 정지 조치에 따라 출국해야 하는 것인?

- ⇒ 출국할 필요가 없으며, 입국 당시에 부여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음
- ⇒ 다만, 사증 효력이 잠정 정지됨에 따라 출국한 후에는 3.9. 이전에 발급받은 사증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공관 안내에 따라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출국 항공편이 없어 출국이 어려운 상황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출국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출국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및 사유서(자유 서식)를 지참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

□ '20. 2. 4. 입국제한조치 관련 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증을 발급합니까?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증신청 시 반드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베이성 방문여부, 잠복기 가능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단,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소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및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유증상 또는 감염이 확진된 외국인이 격리·치료 중 한국에서 체류 기한이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증상 또는 감염 확진으로 격리된 외국인은 격리·치료 중 체류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치료 등을 완전히 받고 일정기간* 내에만 체류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하면 별다른 제재가 부과되지 않으니, 완전하게 치료가 끝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안심하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 단기체류외국인 10일 이내, 등록(거소)외국인 30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후베이성에서 거주하다가 이미 국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 및 출국 지원책은 없나요?

⇒ 현재 갖고 있는 체류자격으로는 더 이상 연장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국인이 호구부 또는 거주증을 통해 후베이성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일정기간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도 외국어 상담이 가능하나요?

⇒ 국내 체류외국인이 외국어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1339 콜센터로 전화하면, 3자 통역지원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통역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1339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불법체류 외국인 지원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코로나19 의심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며,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격리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자진출국자와 동일하게 범칙금 면제 및 입국금지 완화 조치가 되는지?

⇒ 감염병으로 격리조치 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이나 자진출국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출국 신고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 등을 마치고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진료 일자(감염병 진료 사실 입증 필요)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격리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4. 관계기관 정보 연계 관련

유관기관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기록 또는 외국인등록정보(거소 포함)를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제공이 가능한지?

- ⇒ 법무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에서 출입국기록 또는 외국인등록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국적업무 관련

코로나19 대책으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이유는?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이 행사에 따라 백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단하였습니다.

* 2018. 12. 20. 국적법 개정에 따라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국적회복 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

- 이에 따라 집합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환영행사는 생략하고 우편을 통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절차가 진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수여받게 됩니다.
- 이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단계('주의' 이하)로 조정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귀화신청자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를 1년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대책은?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중단에 따라 1년 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해야하는 귀화신청자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는 귀화신청자('19. 2. 8. ~ '19. 7. 23. 신청자)의 결과제출 기한을 '20. 7. 24.로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추가로 중단될 경우 제출기한조정 등 귀화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국적증서수여식 외에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귀화면접심사 및 국적 관련 신고 등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 귀화면접심사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있어 '20. 2. 24.~ 3. 31.동안 면접심사 전체를 중단하였으며, 위기경보 단계의 변화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기관방문을 최소화할 필요에 따라 국적 관련 신고 등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기한이 '20. 2. 24. 이후에 도달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20. 4. 29.까지 해외거주자는 '20. 6. 30.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20. 2. 23.) 이후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행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3월 이후 증서 수여와 관련된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행사는 잠정 중단되어 '20년2월부터 사무소 여건에 따라 비대면(우편) 및 개별 방문 등을 병행하여 증서를 수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18. 12. 20. 개정국적법 시행으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역전파가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 '20년 3월(1개월간) 국적증서 수여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국적취득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년 4월 1일부터 '상시 비대면 증서수여방식'을 도입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출국 임박, 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서장의 허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개별 방문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 국적취득자(귀화자 및 국적회복자)가 사무소 방문 없이 통신망(Fax, E-mail, 휴대전화 SMS 또는 유선 통화)을 통해 국민선서를 하고 우편을 통해 국적수여 증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송달받고 '정부24'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 발급받는 방식
-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1345 및 hi-Korea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과 관련된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 3. 15. 부로 대구·경북 일부(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이에 따른 국적신청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 ⇒ '20. 3. 15. 부로 대구 경북 일부(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민(배우자·부모)의 가족이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를 신청”하거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국적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가 “혼인귀화를 신청할 경우”에는 생계유지 입증서류가 신청 당시 다소 미흡하더라도 혼인귀화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1차 심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제출기한 유예 및 제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상의 구제방안 시행 종료 시점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외국인 사회통합,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등 관련

코로나19 대책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이유는?

⇒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코로나19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추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까?

⇒ 현재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이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위기경보 수준 :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진정단계로 접어들어 위기경보가 하향 단계로 조정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5월부터 영주·귀화신청과 연계된 교육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거점에서만 운영하던 온라인 화상교육을 한시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 3개월간 모든 사회통합프로그램 집합교육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대체 운영되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지역별 집합교육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재개 시 신청자 급증에 대한 대책은?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강의 추가개설, 교육시간 확대 및 평가 기회 추가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89개의 조기적응 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횟수 확대, 교육장소 확보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교육) 운영 방안은?

- 우리 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 위 조치로 인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이수증 없이도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재개 시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에 출국 중인 결혼이민(F-6/등록외국인)자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입국하지 못할 경우 재외공관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국내 체류 중인 사람에 한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변경 허용)과 재외공관에 위임된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F-6) 사증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일시 출국 후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혼이민(F-6) 사증재발급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초청인의 소득요건,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요건) 및 별지 제19호의3 서식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제출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대책은 무엇 인지?

⇒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 사증이 만료된 유학생에게 사증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향후 입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둘째,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경우 개강 연기 등 조정된 학사일정에 따라 체류기간연장을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셋째, 현재 대면교육만 인정되고 있는 한국어연수과정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인정하여 감염병 확산 우려를 감소시키겠습니다.

〈계속 보완 예정〉